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306호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6- 1064호 이의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2
- 공고 제2016- 1068호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공고) 3
- 공고 제2016- 1071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 공고 제2016- 1074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6
- 공고 제2016- 1075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8
- 공고 제2016- 1076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10
- 공고 제2016- 1084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 공고 제2016- 10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3
- 공고 제2016- 10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9
- 남동구보건소 56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공고 75
- 공고 제2016-

고 시

- 고시 제2016- 7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2차) 고시 공고 77
- 고시 제2016- 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냉정지구 소2-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78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6-1064호

이의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이의재결 신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서를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6. 7. 8. ~ 2016. 7. 22(14일간)
4. 이의재결서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 453 - 2712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
 -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주 소	사 유	비 고
김 * 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락골로 **-(운연동)	이의재결서 송달분 반송	

6.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0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7.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2일(15일간)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 예고 통지		
2. 당사자	성 명	여 * 희	주민등록 번호	530727-*****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예고		
5. 법적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071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16. 7. 11. ~ 2016. 7. 26.
2. 공 고 기 간 : 2016. 7. 11. ~ 2016. 7. 26.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6. 7. 26.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 남동구 관허 폐차장
5.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붙임문서】 참조
6.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입니다.

7. 기타사항: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8. 문 의 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무단방치담당(☎ 032-453-2825)

무단방치차량소유자및이해관계인내역

연 번	차량 번호	차 명	차 종	소유자	주민번호	대상자주소	저당등 록내역	저당권 설정자	주소	방치장소
1	서울 83 거4 018	코 란 도- 밴	화 물 소 형	이*구	540220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호(도림동)	을부번 호:1118 200000 0421 설정일 자:2000 131	대우캐 피탈- 주	대전광역시 시 대덕구 송촌동 292번지 3호	도림동 666-1 도림2호 공영주차 장
2	40 가3 774	체 어 맨	승 용 대 형	김*모	560529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 ***호(청학동, *성빌라2차)	을부번 호:2820 200600 0687 설정일 자:2006 0125 을부번 호:2820 200600 8206 설정일 자:2006 1212	이*석	경기도 안산시상 록구 수암동 472번지* *호 *다운빌라 ***호	서판로64 번길 33 (만수동 111-38)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074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6. 7.11. ~ 2016. 8.10.(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6. 8.10.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소유자 미상 이륜차 4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이전)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6년 7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6-211(1)



- 차량번호 : 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KMYSE3ADS5C0248**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 2016년 05월 19일
 - 방치장소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17 지하주차장
- 보관장소 : 기전폐차사업소(032-814-4400)

2016-260



- 차량번호 : 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각자손상 확인불가
- 소 유 자 : 미상
- 방치내역
 - 견 인 일 : 2016년 06월 14일
 - 방치장소 :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신대동(아) 담벼락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2016-266



- 차량번호 : 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각자손상 확인불가
- 소 유 자 : 미상
- 방치내역
 - 견 인 일 : 2016년 06월 14일
 - 방치장소 : 인천 남동구 만수동947-3 기아모터스 앞 인도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2016-269



- 차량번호 : 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각자손상 확인불가
- 소 유 자 : 미상
- 방치내역
 - 견 인 일 : 2016년 06월 14일
 - 방치장소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94-7
- 보관장소 :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075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6. 7.11. ~ 2016. 7.26.(15일간)
3. 공시대상 : 별 첨 참 조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종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56	20마1986	NEW EF쏘나타LP G	이*수(상품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 장안모터프라자***호(상품용)(용답동)	2016.6.17	2016.6.28	기타	구월동 1225-9	2016.6.13	인천폐차사 업소	032-814- 4400	
2	272	앞,뒤번호판없 음(62부6866)	쏘나타III2.0L PG	최*영(동 양자동차 상사)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길 **, "상품용"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길 ***~**(방촌동)	2016.6.17	2016.6.28	기타	논현동 674	2016.6.14	인천폐차사 업소	032-814- 4400	
3	275	40구5385	매그너스2.0 DOHC클래식	정*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길 *(청량리동)	2016.6.17	2016.6.28	기타	석정로552번길9-21 (간석동606-17)	2016.6.13	인천폐차사 업소	032-814- 4400	
4	277	09조7450	아반떼	곽*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	2016.6.17	2016.6.28	기타	논현동 111-222 대양빌라6동앞	2016.6.13	인천폐차사 업소	032-814- 4400	
5	278	62머7029	체어맨	오*석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번길 **, ***호(주안동, *성빌라)	2016.6.17	2016.6.28	기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지하주차장	2016.6.14	인천폐차사 업소	032-814- 4400	
6	281	86서4705	트레이드홈로 리	김*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동 ****호(만수동, *대아파트)	2016.6.17	2016.6.28	기타	논곡로52(논현동 553-2)	2016.6.14	인천폐차사 업소	032-814- 440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076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6. 7.11. ~ 2016. 8.10.(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6. 8.10.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25서3149외 3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이전)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직권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6년 7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차량 등록 번호	소 유 주	구 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5서 3149	이 * 군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	2002.07.22	자장1621-1293	채납처분에 따른 압류
		압류	춘천시청 (교통과 - 전 화:033-250-3367)	2002.07.22	교통91150-4015	주차요금채납
		압류	서구청 교통행정팀	2003.02.25	교통91153-669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032)560-4867,4857
		압류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전화 032-579-2702)	2003.05.06	주관91000-1074	주차요금채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교통과 TEL)032)810-7696	2003.05.20	지교91000-1367	주정차위반과태료 채납
		압류	남 동 구 청 교 통 주 차 단 속 (032-453-2766)	2004.04.28	교통과-11386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309055606)
		압류	남 동 구 청 교 통 주 차 단 속 (032-453-2766)	2004.06.02	교통과-15380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310061391)
		압류	남 동 구 청 교 통 주 차 단 속 (032-453-2766)	2004.07.20	교통과21184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312079120)
		압류	인 천 남 동 경 찰 서 (032-467-5049)	2004.08.30	경비교통과-6910	채 납 처 분 에 의 한 압 류 (200472305029932)
		압류	인천남동경찰서(467-5049)	2004.10.08	경비교통과-8239	채 납 처 분 에 의 한 압 류 (200472305040350)
		압류	인천시청(440-6248)	2004.11.22	주차관리과-11921	버스전용차로위반(대:경기37 허3913
		압류	인천남동구청교통주차단속	2005.03.22	교통과-9890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032-453-2766)(200408022 067)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05.05.12	경비교통과-3890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채납
		압류	연수구교통행정과	2005.08.16	교행91000-23020	주정차위반과태료 채납
		압류	연수구교통행정과	2005.08.16	교행91000-23020	주정차위반과태료 채납
		압류	한국도로공사중부지역본부	2005.10.07	영업부-1818	고속도로통행료채납에따른압 류등록
		압류	인천남동교통과주차단속	2005.10.25	교통과-39396	주정차위반과태료 (200505004917)
		압류	구로구청장(02-860-3194)	2005.12.19	교통지도반-17277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압류	인천남동구청교통과[220000원]	2006.01.05	교통과529/05007909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채납
		압류	남동구청 (032-453-2926)[300000원]	2006.01.17	교 통 과 1995/05012757	의무보험미가입채납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06.03.31	경비교통과-2140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06.03.31	경비교통과-2140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
		압류	남동구청 (032-453-2926)[600000원]	2006.04.20	교 통 과 14089/06000798	의무보험미가입채납
		압류	인천남동구청교통과(453-2897)	2006.06.22	교통과-22422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512008940)
		압류	연수구청	2006.08.25	교통행정과-28614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6-3-101416]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2006.11.22	교통91000-47375	주 정 차 위 반 [2006-03-101469]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 880-4511,7367,7368	2007.10.22	교 통 민 원 91000-26327	주 정 차 위 반 [2007-07-101621]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인천31모9187)	2008.03.12	주차관리과-3014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707000884)
압류	남동구청	2008.03.17	세무1과-4925	지방세체납()
압류	인천남동구청차량관리팀(인천31모9187)	2008.04.17	교통과-13094	의 무 보 험 미 가 입 체 납 (000999-00)
압류	인천남동구청차량관리팀(인천31모9187)	2008.04.17	교통과-13094	의 무 보 험 미 가 입 체 납 (001000-00)
압류	인천남동구청차량관리팀	2008.10.08	교통과-33910	의 무 보 험 미 가 입 체 납 (022840-00)
압류	인천남동구청차량관리팀	2008.10.08	교통과-33910	의 무 보 험 미 가 입 체 납 (022841-00)
압류	인천 남동구청장 (032-453-2890)	2009.02.05	주차관리과-1543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8-07-000347)
압류	인천 남동구청장 (032-453-2890)	2009.02.09	주차관리과-1543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8-09-004586)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09.10.12	경비교통과-008525	과태료미납()
압류	인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0.02.23	교통행정과-2821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체 납 (2009-11-002812)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032-453-2932)	2010.05.06	자 동 차 과 -18050/09007062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체납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0.08.20	경비교통과-007953	도 로 교 통 법 위 반 (230570100068566)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0.12.16	교통행정과-19866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10-09-003466)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0.12.22	경비교통과-101222	과태료 체납(고지번호:230570100304276)(대체:)
압류	인천시 남구청교통민원과	2011.01.06	교통민원과-782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10-08-000485)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1.02.15	자동차관리과-5043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고지번호:025921-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1.02.15	자동차관리과-5043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고지번호:025922-00)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1.07.25	경비교통과-3617	과 태 료 체 납 (고 지 번 호:230570110034731)
압류	인천광역시청,교통관리과	2011.08.16	교 통 관 리 과 -20110816	버 스 전 용 차 로 위 반 (2011-04-000506)
압류	경기 부천시 소사구	2011.12.16	도시건축과-20262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11-07-101209]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교통민원과	2012.04.09	교통민원과-17435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12-01-000234)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2.03.30	자동차관리과-13917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25723-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2.03.30	자동차관리과-13917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25724-00)
압류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교통관리과	2012.04.20	교 통 관 리 과 -5237(4.17)	버 스 전 용 차 로 위 반 (2011-12-000223)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청	2012.06.01	교통민원과-16123	주정차대체(288125 2006 03 2 001 101469)(대체:인천 31모9187)
압류	인천 남동구청	2012.06.15	자동차관리과-26156	자동차검사(등록)과태료 체납 압류(000417-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2.10.02	자동차관리과-44176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14946-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2.10.02	자동차관리과-44176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14947-0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2012.10.12	보험급여부-6272	건강부당이득금(2792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2012.11.15	징수부-4665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 채납액(건강:7867600연금:0고 용:0산재:0)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3.03.04	2013D2305005450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록(230570120879357)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3.03.07	2013D2305006280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록(230570120890727)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3.03.28	2013D2305008140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록(230570120976004)
압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3.04.09	주차사업팀-689	주차요금 채납차량 (2009-17108)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3.11.07	2013D2305021238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록(230570130649963)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3.12.16	자동차관리과-29415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21988-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3.12.16	자동차관리과-29415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21989-00)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3.12.30	2013D2305024295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록(230570130832776)
압류	시흥시청주차단속팀	2014.01.21	주차단속팀-1826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13-10-001976)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4.04.10	2014D2305006334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록(230570131195335)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4.04.10	2014D2305006346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록(230570131195031)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4.06.23	2014D2305013223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록(230570140190116)
압류	인천 중구청교통행정과	2014.10.02	교통행정과-14044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14-06-000172)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5.01.19	자동차관리과-3044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21974-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5.01.19	자동차관리과-3044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21975-00)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5.01.22	2015D2305001745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록(230570141386730)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5.08.04	2015D2305019225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 류등록(230570150380943)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6.06.23	자동차관리과-36682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09208-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6.06.23	자동차관리과-36682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09209-00)
영치	남동경찰서	2015.05.14	경사 유성철	속도위반 20(Km/H이하) 등 9건
영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2과	2015.12.30		보관장소: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무과

차 량 등 록번호	소유 주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 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 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 0 부 8205	G** A M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2012.10.04	교통행정과-19492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12-07-000947)

M** T A FA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2.11.05	2012D230502983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570120683671)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05.28	자동차관리과-239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압류등록
	압류	제천시청 교통과	2013.06.13	교통과-31255	주정차위반 과태료(2013-3092)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3.07.12	자동차관리과-2398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4537-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3.07.12	자동차관리과-2398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4538-00)
	압류	서울 광진구	2013.07.18	교통지도과-16393	주정차위반과태료[2012-12-100253]
	압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2013.08.05	자동차관리과-6751	자동차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 체납(001676-00)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3.11.18	2013D230502173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570130684121)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4.07.22	자동차관리과-37238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7943-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4.07.22	자동차관리과-37238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7944-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5.03.31	세무2과-3243	지방세 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5.12.17	자동차관리과-64184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20634-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5.12.17	자동차관리과-64184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20635-00)
	압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2015.12.28	자동차관리과-55564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006905-00)
	영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2과	2015.02.05		보관장소: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무과

차량등록번호	소유주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인천83나 4453	함*주	저당	LG카드(주) *저당을부번호 : 2801-2002-015536	2002.05.22	3,500,000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2004.01.17	환경위생과-705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저당	정주권 *저당을부번호 : 2801-2004-004905	2004.03.30	3,000,000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2004.06.10	환경위생과-7991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남구청 (2004-012033)	2004.11.08	교통91180-357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태료 압류금액:5,000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문화산업국 환경위생과	2004.12.10	환경위생과-18418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인천남구청(인천80러7387)	2005.01.31	교통91180-3671	책임보험과태료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2005.06.10	환경녹지과-3768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환경국 환경녹지과	2005.12.14	환경녹지과-13190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인천남구청	2006.06.15	환경녹지과-8855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06.07.11	교통과 -28251/060117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체납

입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06.07.11	교 통 과 -28251/060117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체납
입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06.08.23	교 통 과 -33894/060003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체납
입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06.08.23	교 통 과 -33894/060003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체납
입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06.08.23	교 통 과 -33894/060003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체납
입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06.08.23	교 통 과 -33894/060003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체납
입류	인천남동구청교통과	2006.08.30	교통과-32459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603000090)
입류	인천남동구청교통과	2006.08.30	교통과-32459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603000090)
입류	남동구청[22000원]	2007.04.02	교 통 과 13640/06020362	의무보험미가입체납
입류	남동구청[11000원]	2007.04.02	교 통 과 13640/06020363	의무보험미가입체납
입류	인천남동구	2007.04.12	환경위생과-7815	자동차분환경개선부담금
입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	2007.04.24	부과징수-772	체납처분에의한 압류등록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08.03.12	주차관리과-3014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708001930)
입류	인천 남동구청	2009.07.16	교통행정과-10569	주정차위반(2009-02-000690)
입류	인천 남동구청	2009.07.16	교통행정과-10569	주정차위반(2009-02-002802)
입류	인천광역시	2011.07.13	세정과-1819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환경보전과	2011.07.18	환경보전과-1944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환경보전과	2012.01.11	환경보전과-95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2.04.13	세무과-9477	지방세 체납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환경보전과	2012.07.09	환경보전과-1846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환경보전과	2013.01.10	환경보전과-875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3.02.15	자동차관리과-7446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27220-00)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3.02.15	자동차관리과-7446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27221-00)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3.06.10	환경보전과-14855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4.01.13	환경보전과-115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4.06.13	환경보전과-1829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4.06.27	자 동 차 관 리 과 -32665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06842-00)
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4.06.27	자 동 차 관 리 과 -32665	의 무 보 험 미 가 입 과 태 료 (006843-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4.12.19	환경보전과-4214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남동구청	2015.04.30	자 동 차 관 리 과 -21670	검사압류(자동차관리과-2167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 경국 환경보전과	2015.06.29	환경보전과-1949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 경국 환경보전과	2015.12.17	환경보전과-4026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 제국 환경보전과	2016.06.14	환경보전과-1565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차 량 등 록번호	소유 주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인 천 32 다1282	김 * 애	저당	현대캐피탈(주) *저당을부 번호 : 2801-2002-018729	2002.06.20	4,750,000	
		압류	인 천 연 수 경 찰 서 (032-821-3346)	2003.03.12	교통 63310 - 880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 류
		압류	인천연수경찰서	2003.03.24	교통63310-964	과 태 료 미 납 (200272309056086)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교통 과 TEL)032)810-7696	2003.05.20	지교91000-1367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압류	남 동 구 청 교 통 주 차 단 속 (032-453-2766)	2004.06.02	교통과-15380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310062927)
		압류	남 동 구 청 교 통 주 차 단 속 (032-453-2766)	2004.06.21	교통과17676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311071538)
		압류	연수구청[5000원]	2005.01.24	교 통 행 정 과 2160/040055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과태료체납
		압류	남 동 구 청 교 통 주 차 단 속 (032-453-2766)	2005.03.08	교통과8131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408015623)
		압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01.17	2006카단155	자동차가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600000원]	2006.02.27	교 통 행 정 6234/050060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과태료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300000원]	2006.05.23	교 통 행 정 16744/060008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과태료체납
		압류	인 천 남 동 구 청 교 통 과 (453-2897)	2006.06.22	교통과-22422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0512002036)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0000원]	2006.11.23	교 36387/06003688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체 납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2006.11.27	교통행정과-46382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5-08-104884]
		압류	인천광역시남동구청	2007.09.06	주차관리과-9195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 (200705002022)
		압류	시흥시 차량관리사업소	2007.11.12	차 량 관 리 사 업 소 -10991	주정차과태료(288125003441)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032-509-6747,9	2008.04.22	교통행정과-19069	주정차위반(2007-12-203231)
		압류	인천남동구청	2008.10.17	주차관리과-15534	주정차위반(2008-02-007926)
		압류	인천남동구청	2008.10.17	주차관리과-15534	주정차위반(2008-02-002621)
		압류	인천남동구청	2008.10.20	주차관리과-15534	주정차위반(2008-03-007729)
		압류	인천남동구청	2008.10.20	주차관리과-15534	주 정 차 위 반 (2008-04-002869)
		압류	연수구청	2009.01.16	환경위생과-1196	운 행 차 정 밀 검 사 과 태 료

					(001474-00)
압류	인 천 남 동 구 청 (032-453-2890)	2009.08.26	교통행정과-13010	주 정 차 위 반 (2009-05-000695)	
압류	인천 남동구청 (032-453-2890)	2009.10.28	교통행정과-16670	주 정 차 위 반 (2009-07-000369)	
압류	인천서구청교통행정과	2010.08.16	교통행정과-20507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10-02-002358)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 리공단	2013.09.04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1783	주차요금 체납압류 (2012-21637 외 5건)	
압류	서구청주차관리과	2014.05.15	주차관리과-7328	주 정 차 위 반 과 태 료 (2013-12-001189)	
압류	익산경찰서	2014.07.24	2014D1705012964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 등 록 (170570140212273)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09.16	세무과-19097	지방세 체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084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25건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90,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25건
 - 상위법령 제 개정 사항 미반영 및 인용조문 오류 : 33개 조문
 - 상위법령 위임범위 위반 및 유명무실 : 8개 조문
 -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 6개 조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4항 등 관련 법규 25건

남동구 조례 제 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2조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을 “단원의”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제1항과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
② 삭제

제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민원사무의”를 “민원의”로 한다.

제1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4”로 한다.

제1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를 “사실조사”로 한다.

제1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로 하고, 제7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로 하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를 “(녹색제품 구매 예외)”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제11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을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남동구의회의장이”를 “남동구의회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을 “(손해배상)”으로 하고, 제20조 중 “하고,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등”으로 한다.

제1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2조제5항”을 “제69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12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1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62조제5항”을 “제69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제47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를 “동법 제5조의2제3항 및 제47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2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6호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이”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2조(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u>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2.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u>	<u>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u>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제6조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 ----- ----- -----.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해임 등) ① 단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단장, 간사, 행정동 단위 대표,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등) ① ----- ----- ----- ----- -----.
1. <u>단원이 사망 또는</u>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1. <u>단원의</u>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며, 「 <u>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u> 」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인터넷민원 접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 -----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 7. (생략)

제8조(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0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생략)

② 민원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제2조(용어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남동문화원의 지원·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9조----- ----- ----- ----- ----- ---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 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 ② 삭제

손해보전 및 타워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3. 「 <u>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 」에 의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생략) ③ (생략)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② (생략) ③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u>민원사무의</u>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민원의</u> ----- -----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 표 1과 같이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 ----- ----- ----- 제38조의4-----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 -----.

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 감정평가업자 -----
-.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사실조사 의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u> 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 ----- ----- ----- <u>사실조사</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u>법 제8조제2항</u> 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법 제8조제3항</u>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친환경상품</u>"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u>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생략)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u>친환</u>	<u>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u>녹색제품</u> ----- ----- -----.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u>녹색제품</u>"----- ----- ----- -----<u>녹색제품</u>----- ----- -----. 2. (현행과 같음) 3. ----- ----- ----- -----<u>녹색제</u>

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품-----
-----.

4. -----
-----녹색제
품-----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 ① -----
- 녹색제품 -----
---- 녹색제품 -----
-----.

② -----
-----.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 녹색제품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생략)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

1. 녹색제품 -----
-----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
----- 녹색제품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녹색제품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

----- 녹색제품 -----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

----- 녹색제품 -----

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
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
수한 경우

2. (생 략)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
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
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생 략)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친환경상
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
련)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
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
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구청장
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
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
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

1. ----- 녹
색제품-----

2. (현행과 같음)

3. 녹색제품-----

4. (현행과 같음)

5. 녹색제품-----

② -----

-----녹색제
품-----
-----.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
련) ----- 녹색제품 -----

-----.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
-- 녹색제품-----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 녹색제품 -----

-----.

② -----

----- 녹색제품 -----

-----.

③ -----

녹색제품 -----

-----.

제13조(포상) ----- 녹색제품 -----

-----.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 -----

보훈대상자와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략)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 ~ 6.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 6. (현행과 같음)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1. · 2. (생략) 3. <u>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u> 4. · 5. (생략) ③ ~ ⑥ (생략)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17.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생략)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분야 교수, 인천광역시 <u>남동구의회의장이</u> 추천한 구 의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 ----- ----- ----- <u>남동구의회가</u> ----- ----- -----. ----- -----.
제17조(복지관의 임대) ① (생략)	제17조(복지관의 임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 <u>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u> 」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 ----- ----- 「 <u>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u>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u>) 수탁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u>하고,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u>	제20조(<u>손해배상</u>) ----- ----- ----- ----- ----- ----- <u>한다.</u>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법 제12조에 의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③ -----
----- 법 제13조-----

-----.

④ · ⑤ (현행과 같음)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u>제62조제5항</u> 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10,000원 미만이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둔 자 2. (생략)	제3조(지원대상자) ----- ----- ----- -----. 1.----- ----- ----- <u>제69조제5항</u> ----- ----- -----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구 소속 공무원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삭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동법 제47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u>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	제1조(목적) ----- ----- ----- ----- ----- ----- ----- ----- -- <u>동법 제5조의2제3항 및 제47조</u> ----- ----- -----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u>다음 각 호의 1에</u>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u>한정치산자</u> 2. <u>금치산자</u> 3.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u> 4. <u>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u>	----- ---.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u>청소년 기본법</u>」 제21조제3항에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입양아"란 「<u>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u>」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4. ~ 6.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입양특례법</u>」 ----- ----- -----. 4. ~ 6. (현행과 같음)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 4. (생략)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 및 유치원은 관할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

1. -----

---- 어린이집 -----
-----.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

-----어린이집으로 ----. ----

-----.

제6조(지원신청) -----

-----,

-----어린이집은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u>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신규 자료를 추가로 구입·비치하여야 한다.</u> 3. ~ 5. (생략)	제22조(설비에 대한 조건)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략) 6. <u>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이</u>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7. (생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u>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u> ----- ----- 7.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4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2. 인천광역시남동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 2016.3.29.] [법률 제14098호, 2016.3.29., 일부개정]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4260호, 2016.5.29., 일부개정]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4.6.]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12.30.>]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2015.2.16.>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4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4.1.29.>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 2014.3.31.] [법률 제12140호, 2013.12.30., 일부개정]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4252호, 2016.5.29., 일부개정]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위탁기준및방법) 제3항, 제4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개정 2014.1.21.>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5항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5항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2항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3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6.2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입양특례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322호, 2015.5.18., 일부개정]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9.21.> [제목개정 2009.9.21.]

[별표 1] <개정 2015.5.6.> [시행일:2015.7.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개정 2014.1.21.>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10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회의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회 운영에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90,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회의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회 운영에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심의회의 구성원 정비 (안 제3조제3항)
- 회의록 별지 신설 (안 별지 제3호 서식)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3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 규칙심의회 회의록

일시				장소	
참석현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 위원)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비 고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 ----- -----.
제3조(구성) ①·② (생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③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7. 안전총괄실장</u>	<u><삭 제></u>
<u>8. (생략)</u>	<u>7. (현행 제8호와 같음)</u>
<u>9. 홍보미디어실장</u>	<u><삭 제></u>
<u>10. (생략)</u>	<u>8. (현행 제10호와 같음)</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록) ① (생략)	제13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u>②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6-10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환경부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2012.11.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입각한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 필요

2.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개정(안 제9조제3항 [별표3])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청소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6층 청소과(만수동, 남동구청)
- ☎ 453-2565, FAX 453-25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2.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환경부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2012.11 환경부종량제 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입각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제9조 제3항)
 - 수수료 인상율 : 부피(ℓ) - 66.7%, 무게(kg) - 42.9%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 [별표3]

용량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개정 전	120원	180원	300원	600원	1,200원
개정 후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기준 수수료 [별표3]

구 분	부피 (ℓ)	무게(kg)
개정 전	60원	70원
개정 후	100원	100원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2.11)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배출자”를 “다량 배출자”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다방”을 “찻집”으로, “과자점의”를 “과자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건조에 의하여”를 “건조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2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수거를”을 “수집·운반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 (제9조 제3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판매가격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판매수수료	14원	22원	36원	72원	144원
봉투규격 (가로-세로,cm)	19×22.9	22×26	26×31	33×40	41×49

※ 판매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에 포함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기준 수수료

구 분	단 위	수수료
무게 수수료(무게 산정 시)	1 kg	100원
부피 수수료(부피 계량 시)	1 ℓ	100원

○ 음식물류 폐기물 비중 1.0 적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 4.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u>다량 배출자</u> ----- ----- ----- ----- ----- ----- -, ----- ----- 찻집 ----- ----- ----- <u>과자점</u> ----- ----- ----- ----- ----- -----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 대
해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해서-----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
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
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
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
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
여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
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생 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
치)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
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
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
와 수요자를 연계 ·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
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

-----.

1. · 2. (현행과 같음)

3. -----

-- 건조의 방법으로 -----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
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2개월 -----

-----.

③ -----

----- 위한 -----

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
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
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
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집·운반의 중지) ① 수수
료를 1월 이상 체납하는 사업장
등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
여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
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공동용기 사용
배출지역이나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을 중지할 수 있다.

-----.

④ -----

----- 마
련하여야 -----.

제21조(수집·운반의 중지) ① ---
--- 1개월 -----
-----대해
서-----
----- 수집·운반을 ---
-----.

② -----

-----대해서---
-----.

[참고 자료]**■ 폐기물 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2. 11)

I.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II.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III.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외의 장소에서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 방식을 '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 하여야 함
- 수수료 종량제방식에 기초하여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용함
-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 선정

IV. 세부 시행지침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방식 선정 원칙

- 배출량은 무게단위로 산정하고, 수수료 요율 차등부과를 위해 후불방식 우선 고려
- 종량제 방식 권장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기존 수거체계를 활용하여 단계적 개선이 가능한 방식 선정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비용 절감 및 수수료 상승에 따르는 연차별 비용효과와,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르는 초기투자비용을 분석하여 선정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의 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산정
- 수수료 산정기준은 무게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피단위 종량제 시행시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부피환산계수는 1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지역 내 표본지역 대상)
- 특·광역시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시·구·군에 대하여 부피환산계수를 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음

나.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
 -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frac{\text{종량제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합계}}{\text{종량제방식별 수집} \cdot \text{운반} \cdot \text{처리에 소요된 비용합계}} \times 100$$
- 종량제방식별 봉투, 칩, 납부필증 등의 선납부 수수료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판매수입으로 산정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종량제방식별로 산정
- 종량제방식별 단위무게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 kg당 수집 · 운반 · 처리비용 x 발생량 x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목표치)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 현재를 기준으로 '13년 말까지 현재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고, 매년 상향 조정하여 특·광역시는 '15년까지, 일반 시는 '16년까지, 도·농 통합 시는 '17년까지, 군 지역은 '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 달성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

(%)

구 분	'10년 (기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평균	32.1	50	60	70	80	80	80
특·광역시	54.6	60	70	80	80	80	80

- 도시유형별로 상·중·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높게,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는 낮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가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동 가이드라인(안)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주민부담률 목표치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낮은 주민부담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 적정 수수료의 부과는 해당 자치단체별 여건(수집·운반 및 처리)이 다르므로 자치단체별로 원가 산정 후 정하도록 함
- 지자체별 수수료의 편차가 클 경우 주민들 간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광역시자치단체 내의 시, 구 지역은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특광역시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음

-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선납 또는 후납 방식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 요율 차등 부과제를 감안하여 후납방식 우선 고려
- 후납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업소별)로 부과하는 종량제방식을 강구하되 거점 종량제방식 적용지역에는 단지별로 부과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한 칩 배부(선납제), 수수료 면제(후납제)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56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공고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공고)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7.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16. 7. 12. ~ 2016. 7. 26.(15일간)
3. 당 사 자
- (주)덴탈매니아외 8개소(※붙임문서 참조)
4.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의료기기법 제36조)
5. 행정처분일 : 2016. 7. 12.
6.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멸실
7.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8. 청 문 일 : 2016. 6. 16.
9. 공시송달 청문일 : 2016. 7. 7.
10.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032-453-5083)

[붙임 문서]

순번	신고번호	영업소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도로명)
1	276	케이테크	김*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68, 201호 (간석동)
2	116	드림메디칼	송*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61번길 40, 210호 (간석동, 범양상가)
3	173	알폰소 뉴코아인천점	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85, 5층 (구월동, 뉴코아아울렛)
4	12	롯데백화점인 천점엘르	구*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8, 지하2층 (구월동, 롯데백화점)
5	135	롯데백화점(프 리미에쥬르)	장*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8, 지하2층 (구월동, 롯데백화점)
6	211	하나	양*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58, 101호 (논현동)
7	95	(주)텐탈매니 아	신*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1, 6층 (논현동, 남동메디칼)
8	171	베이직엘르(논 현점)	원*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96, 지하2층 (논현동, 논현홈플러스)
9	232	이레 메디칼	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11, 지하002호 (만수동, 현대아파트상가)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6-7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7.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삼마 TOP-Class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삼마종합건설(주) (대표자:윤해중)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129, 4층(서창동)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7-1번지
- 대지면적
 - 당초 : 3,148m², 변경 : 3,134m²
- 연 면 적
 - 당초 : 10,280.8019m², 변경 : 10,330.6445m²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15층, 1개동, 아파트 90세대
- 사 업 비 : 15,085,500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15. 5. 27. ~ 2016. 07. 26.

5. 주택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6-76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냉정지구 소2-1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 냉정지구 소2-1호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건설과(☎453-27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7.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14(수산동)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냉정지구 소2-1호선)
 - 명 칭 :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 규모
 - 소로2-1호선 B=8.0m, L=393.0m(총 912.0m 중)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변경있음**
 당초 : 2015. 8. 7. ~ 2016.12.31. 변경 : 2015. 8. 7. ~ 2017.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있음** 「붙임」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시행	소로	2	1	8	국지	총연장: 912m 금회개설: 393m	대1-13 수산동 177-1	- 수산동 277-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일부 국유지 확장

- ☐ 용지조서(변경없음)
- ☐ 지장물 조서(변경있음)

구분	연번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위	수량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주 소	성 명	연락처	
변경 있음	1	수산동	262-11	간판	지주간판	개	1		어**	032-****-***	인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김**		
	1	수산동	262-11	간판	지주간판	개	1		이*		인천남동구배려터로** (수산동)	김**		
변경 있음	2	수산동	263-8	간판	지주간판	개	1		어**	032-****-***	인천시서구신현동* 원흥아파트*--****	송**		
								인천시 수산동 ***	**** 농원	032-****-***	인천시서구신현동*** 원흥아파트*--****	송**		
	2-1	수산동	263-8	간판	노란색간판 부분	개	1		이*		인천시서구신현동* 원흥아파트*--****	송**		
	2-2			간판	지주간판	개	1	인천시 수산동 ***	**** 농원	032-****-***	인천시서구신현동*** 원흥아파트*--****	송**		
변경 없음	3	수산동	263-5	담장	메쉬웬스	m	20.0	인천남동구구월동** * 팬더아파트*--****	송**		인천남동구구월동*** 팬더아파트*--****	송**		
변경 없음	4	수산동	263-4	담장	메쉬웬스	m	6.0	인천시남동구수산동***	오**		인천시남동구수산동***	오**		
	4	수산동	263-4	담장	메쉬웬스(대 문포함)	m	14.0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오**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오**		
변경 있음	5	수산동	139-7	수목	밤나무외홍 고 =5~30cm	주	12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담장	그물웬스	m	34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5	수산동	139-7	매화 나무		주	9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밤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참나무		주	2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뽕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라일락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수산동	139-7	사철 나무		주	4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단풍 나무		주	2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무궁화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철쭉		주	8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벚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담장	그물웬스	m	34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변경 없음	6	수산동	264-1	담장	블록 H=2.0m	m	11	인천시 수산동 ***	**** 농원	032-****-***	경기부천시오정구중동 로	이**		

	6	수산동	264-1	담장	블록 H=2.0m	m	11	경기부천시오정구중 동로 ***번길***(삼정동)	이**	경기부천시오정구중동 로 ***번길***(삼정동)	이**	
7		수산동	265-5	담장	블록 H=2.0m	m	16.0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김**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김**	
				철문	1.6 x 3.0	개	1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김**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김**	
				수목	소나무 외 흉고=10~50cm	주	20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김**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김**	
				담장	메시형울타리	m	37.0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김**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김**	
		수산동	265-5	담장	벽돌 H=2.0m	m	16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철문	1.6 x 3.0	개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소나무		주	3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소나무		주	13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회화 나무		주	2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명자 나무		주	2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고염 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라일락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수산동	265-5	회화 나무		주	3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등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옥매화		주	2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넝쿨 장미		식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사철 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능소화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소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대추 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참죽 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넝쿨		식	1	인천시남동구	김**	인천시남동구	김**	

				장미				수산동***~*			수산동***~*		
				회화 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자귀 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플라 타너스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담장	능형망	m	37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가추	1*2m	식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김**	
지역별 비고	8	수산동	266-3	수목	소나무 흉고=10cm	주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수산동	266-3	소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남촌동 ***~*풍림아파트*** 동***호	김**		인천시남동구남촌동** ***~* 풍림아파트***동***호	김**	
				소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남촌동 ***~*풍림아파트*** 동***호	김**		인천시남동구남촌동** ***~* 풍림아파트***동***호	김**	
				단풍 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남촌동 ***~*풍림아파트*** 동***호	김**		인천시남동구남촌동** ***~* 풍림아파트***동***호	김**	
				단풍 나무		주	5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지역별 비고	9	수산동	284-2	수목	밤나무외흉 고=5~30cm	주	8	인천시남동구남촌동 ***~* 풍림아파트***동*** 호	김**		인천시남동구남촌동** ***~* 풍림아파트***동***호	김**	
		수산동	284-2	회화 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남촌동 ***~*풍림아파트*** 동***호	김**		인천시남동구남촌동** ***~* 풍림아파트***동***호	김**	
				사철 나무		주	4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개나리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황매화 나무		주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명자 나무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은행 나무		주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조팝 나무		주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회양목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무궁화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미루 나무		주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인천 남동구 수산동 ***	㈜*** 에프	
지역별 비고	10	수산동	283-3	수목	흉고=10cm	주	13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신**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신**	

변 경 지 역	10	수산동	283-3	벚나무		주	13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신**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신**		
		수산동	282-2	수목	흉고=10cm	주	11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신**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신**		
	11			비닐 하우스	강봉조	m2	29/2 89 (편입 /전체)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신**		인천시남동구수산동 ***-*	신**		
		수산동	282-2	벚나무		주	4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11			사철나 무		주	3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벚나무		주	7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블루 베리		주	40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딸기		식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담장	현수막포함	m	2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대문	6m	식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비닐 하우스	강봉조	m	150/ 150 (편입 /전체)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신**		
	12	수산동	281-3	수목	흉고=10cm	주	15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수산동	281-3	벚나무		주	4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철쭉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회양목		주	3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감나무		주	2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대추 나무		주	6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단풍 나무		주	1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이**		
	13	수산동	269-4	수목	단풍나무외 흉고 =10cm	주	78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담장	메쉬웬스	m	83.0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13	수산동	269-4	불도화		주	1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회양목		주	25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소나무		주	1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단풍 나무		주	6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명자 나무		주	4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황매화 나무		주	14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주목		주	1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조팝 나무		주	13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자귀 나무		주	1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자두 나무		주	2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행자 나무		주	5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사철 나무		주	1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개나리		m	4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벚나무		주	1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두릅		주	2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담장	메쉬웬스	m	83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경기김포시양촌면 마산리***	김**		
제1000 필지3	14	수산동	280-1	담장	블록 H=1.5m	m	8.0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수목	장미 외 총고=10cm	주	25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화단	2.0 x 8.0	m2	18.5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철문	2.0 x 2.0 외	개	2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14	수산동	280-1	담장	벽돌 H=1.5m	m	8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주목		주	3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주목		주	2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감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아기씨 나무		주	2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장미		주	3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벚나무		주	4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구지뽕		주	10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자두 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화단	수목포함	m²	19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대문	2.0 * 2.0 외	개	2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정**			
	제1000 필지3	15	수산동	279-5	담장	함석 H=2.0m	m	42.5	인천시남동 구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수목	소나무 외 총고=10cm	주	15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15	수산동	279-5	담장	함석 H=2.0m	m	43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벚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사철 나무		주	2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명자 나무		주	7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블루 베리		주	50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뽕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매화 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살구		주	1	인천시남동구	신**		인천시남동구	신**		

				나무				수산동 구수골로**			수산동 구수골로**			
				벗나무		주	2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소나무		주	1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인천시남동구 수산동 구수골로**	신**		
변 경 지 역	16	수산동	139-9	목련		주	1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진**		
				매실 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진**		
				능소화		주	1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진**		
				대추 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진**		
변 경 지 역	17	수산동	261-3	헨스	그물망헨스	m	20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김**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김**		
				배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김**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김**		
				수목	수종미상	주	1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김**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	김**		